

工業所有權審判事例

国内事件

實用新案 拒絕査定

〈大法院 第3部 判決〉(1986. 6. 24)

事件番號 : 83 후 110

裁判長 : 김 달식

關與法官 : 김 형기 · 정 기승 · 박 우동

1. 審判請求人(上告人) : 日本 소니(주)(대표 : 이와마 가즈오)

2. 被審判請求人(被上告人) : 特許廳長

3. 原審決 : 特許廳 1983. 11. 19字, 1982年 抗告審判(絶) 第1025號 審決

4. 主文 : 上告를 棄却한다. 上告費用은 上告인의 부담으로 한다.

5. 理由 :

上告理由를 判斷한다.

實用新案法이 정하는 實用的 考案이라 함은 물품의 形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自然法則을 이용한 技術的 사상의 創作으로서 特許法이 정하는 自然을 정복하고 自然力を 이용하여 일정한 효과를 創出하고 이에 따라 人間의 수요를 충족하는 技術的 사상의 고도의 創作인 發明과 그 성질에서 같으나 다만 고도의 것이 아닌 점에서 다를 뿐이므로, 實用新案法에 의하여 奬勵·保護·育成되는 實用新案은 물품의 특수한 형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實用性, 즉 實用的 가치, 나아가 그 技術的 考案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 技術的 사상의 創作으로서 그 작용효과가 登錄의 적부를 가리는 주요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폴이할 것이다. (당원 1983. 11. 22 선고, 33 후 42판결 참조).

記錄에 의하면, 이 사건 出願考案의 요지는 첫째, 리이드레스 回路部品(4)을 고정할 위치에 명도가 높은 도료(10)를 도포하고 둘째, 그 위에 접착제를 도포한 다음 세째, 리이드레스 回路部品을 고정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한 프린트기판에 관한 것으로서, 回路部品을 접착할 접

착제가 소정의 도포범위에 정확히 도포되었는가의 여부를 쉽게 識別할 수 있게 함으로서 作業性 및 回路의 신뢰성을 높힐 수 있게 한다는데 있는바, 접착제를 도포할 범위에 미리 명도가 높은 도료를 도포한다는 정도의 考案은 일정한 위치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그 위에 回路部品을 고정시키는 종래의 구성과 그 형태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불과하여 그 技術的 사상의 創作으로서 그 작용효과상 進歩를 가져온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정도의 考案은 그 考案에 속하는 技術分野에서 通常의 知識을 가진者가 종래의 구성으로부터 容易하게 考案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實用新案의 登錄對象이 될 수 없다 하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한 原審의 判斷措置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판단유탈·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論旨는理由없다.

그러므로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訴訟費用은 敗訴者的 負擔으로 하여 關與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 <略>